

NEWSLETTER

December 2023

블록체인팀

Blockchain Team

CONTACT



변호사 윤종수

T: 02.6386.6601

E: jay.yoon@leeko.com

변호사 강현구

T: 02.772.4429

E: hyunkoo.kang@leeko.com

변호사 이정명

T: 02.6386.0730

E: chloe.lee@leeko.com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2023. 12. 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이하,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 7. 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관련 사항

■ 가상자산 범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예금 토큰(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것에 한정됨) 및 NFT(Non-Fungible Token)를 제외하였습니다. 단,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전자채권과 모바일상품권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제외되고 있었으므로 예금 토큰과 NFT가 가상자산 범위에서 새로이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용자의 예치금 보호 및 가상자산 보호에 관한 사항

■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 및 운용방법

이용자 예치금을 예탁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고,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성실하게 관리하고,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제·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용자 예치금의 우선지급, 양도 등

예치금의 이용자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이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다음 규정된 지급액,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을 직접 지급 및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콜드월렛, 즉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는 가상자산의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한바, 이는 현재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ISMS 인증 시 요구되는 기준인 '가상자산 전체 수량의 '70%'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때,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산정됩니다.

■ 준비금 등의 적립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보상한도 및 적립금액의 경우, 핫월렛이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하여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소 기준(원화마켓 거래소: 30억원; 그 외 사업자: 5억원)에 미달하면 최소 기준 금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중요정보의 공개 방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 후 6시간이 경과한 때에,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한 때에 공개정보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체계를 따르되,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공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입·출금 차단의 예외적 허용

가상자산사업자의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그 차단 조치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이용자에게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거래 감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 과징금 부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보를 받기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2023. 9. 25.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따른 것입니다.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절차,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등은 곧 규정제정예고가 진행될 「가상자산 조사 업무규정」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금번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은 이용자 자산의 안전한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의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법 규정만으로는 규제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내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 정책 및 체계 마련 등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 발표와 함께 관련 Q&A를 공개하여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 기준, DeFi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의 금지 여부,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 금지 여부, 가상자산 스테이킹의 금지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바, 이로써 관련 서비스 사업자 및 그 이용자들의 법적 불안정성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 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예고기간 이후 최종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의 내용과 그 입법 추이를 계속하여 지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블록체인팀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블록체인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